

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

2022년 4월호

1.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 규정

- 가.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
- 나.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
- 다.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
- 라.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

2. 한국거래소 규정

- 가.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
- 나.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
- 다. 코스닥시장 상장규정
- 라.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
- 마.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

3. 금융투자협회 규정

- 가.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
- 나.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

1.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 규정

- 가.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(영구채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)
- 나.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(금융감독원이 실시하는 종합·부문검사를 정기·수시검사로 변경)
- 다.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(2,000만불 이하 역외금융회사 투자시 사후보고 가능 등)
- 라.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(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집행을 위한 필요사항 제정)

1.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 규정*

가.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(2022/3/7 개정·2022/3/10 시행)¹⁾

1) 개정 이유

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(2021.12.9. 개정)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□ 분기보고서 작성 간소화(제4-3조)

- 분기보고서에는 필수항목(재무사항, 사업내용 등)만 기재하고, 임원의 현황 등 그 외의 사항은 달라진 경우에만 기재하도록 함

□ 영구채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관련(제4-5조)

-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 제1항 제2호의 사채의 의미를 명확화
 -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채”란 만기의 영구성, 이자(배당) 지급의 임의성, 채무변제의 후순위성 등의 특성을 가지며,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받는 채무증권을 말함

□ 기타 조문 정비(제4-2조)

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된 소액공모 결산서류 제출 면제 근거와 관련하여 ‘증권 소유자 수’의 의미를 명확화

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1) 제4-3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관한 분기보고서를 기재하는 경우부터 적용, 제4-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사채를 발행(추가발행을 포함한다)하는 경우부터 적용

나.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(2022/3/3 개정 ·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'검사·제재 혁신방안'(2022.1.27)에 따른 개정 건의사항 및 규정 개정 수요를 반영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금융업관련법에 최근 제정법인 「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」, 「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」을 추가(제3조)
- 종합·부문검사를 정기·수시검사로 변경(제3조, 제8조, 제8조의2, 제13조)
 - '검사·제재 혁신방안'의 일환으로 금융감독원이 실시하는 검사의 종류를 기존 종합검사 및 부문검사에서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로 변경
- 임원 제재 경합가중 요건 변경(제24조의2)
 - 임원 제재가 경합가중되는 동일 검사 내 위법·부당행위의 건수를 기존 2건에서 3건으로 개정
- 금융감독원장의 수사당국에의 고발·통보 요건 명확화(제29조)
 - 금융감독원장이 임직원 위법·부당행위에 대해 수사당국에의 고발 및 통보가능 요건을 '금융관련 법규상 벌칙,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적용을 받거나 「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'로 명확화

다.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(2022/3/3 개정 ·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금융회사의 해외직접투자 증가, 역외금융회사를 통한 투자 비율의 증대 등 금융업계의 변화를 반영하여 금융회사의 원활한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현지법인·현지법인금융기관 지점의 사업계획서 등 보고의무 면제 명확화(제3조)
 - 금융회사가 설립한 현지법인·현지법인금융기관이 지점을 설립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및 경비명세서 등 보고의무 면제를 명확화

- 해외상장법인 투자시 주식평가의견서 제출 면제(제3조)
 - 금융·보험업외 해외상장법인 투자시 주식평가의견서 제출을 원칙적으로 면제
 - 건전성·법률·경영리스크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한정하여 감독원장이 제출요청 가능
- 2,000만불 이하 역외금융회사 투자시 사후보고 가능(제7조)
 - 금융회사의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1년 이내 투자금이 2,000만불 이내인 경우 투자 후 1개월 이내 사후보고 가능 단서 신설
- 역외집합투자기구 투자시 지분율 변동보고의무 완화(제7조)
 - 금융회사의 투자금 변동없이 타투자자의 환매 등으로 역외집합투자기구 지분율 변동시 변경보고 의무 면제
- 해외지점의 부동산·증권·상환기간 1년 초과 대부 거래활동에 관한 신고의무 완화(제12조)
 - 부동산·증권·상환기간 1년 초과 대부 거래 등 영업활동에 대해 사전신고에서 1개월 이내 사후보고로 변경

라.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(2022/3/31 제정·시행)

1) 제정 이유

-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
 - 「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」 제5조 제29호 및 제7조의3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및 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특별사법경찰 설립

2) 주요 내용

- 총칙(제1조~제5조)
 -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의 자세와 책임, 법령 적용원칙 등을 규정
 -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, 자본시장 범죄의 추방을 목적으로 함
- 조직 및 운영(제6조~제19조)
 -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내에 수사부서의 설치·운영,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 및 지위·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
 -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관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직무로 하며, 감사 및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

□ 수사(제20조~제49조)

- 수사의 절차 및 변호인의 참여, 피의자 등에 대한 자료·의견 제출기회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
 -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피의자 등 사건 관계자와 친족 기타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그 수사의 공정성을 잃을 우려가 있거나 의심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수사를 회피하여야 함
 -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,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 청구를 신청할 수 있고, 긴급체포를 할 수 있음
 -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경우 검사에게 압수·수색·검증영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,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긴급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·수색 또는 검증할 수 있음
 -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에 있어 필요한 경우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할 수 있음

□ 사건의 송치(제50조~제54조)

-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종결한 이후 사건을 송치하는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

2. 한국거래소 규정

- 가.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(의무보유 기간 연장 및 대상 확대 근거규정 명시 등)
- 나.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(주된 영업정지 등 발생 시 채권 상장폐지 기준 명확화)
- 다.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(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의무보유)
- 라.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(의무보유 협약서 서식 정비)
- 마.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신용위험한도 초과포지션 해소의무 이행 간주 요건 신설)

2. 한국거래소 규정*

가.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(2022/3/16 개정 · 2022/3/18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신규상장기업 등의 상장 후 책임경영 등을 위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하는 주식도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하는 등 의무보유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주식매수선택권(스톡옵션)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의무보유(제27조)
 - 신규상장기업 등의 책임경영 및 공정한 주가의 조기형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주주등의 의무보유 기간 중 스톡 옵션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도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
 - 우회상장, 재상장 및 합병상장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(제35조, 제40조, 제75조)
- 의무보유 기간 연장 및 대상 확대 근거규정 명시(제27조)
 - 의무보유 대상자가 요청하거나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최대주주등의 의무보유 기간을 추가로 연장 (2년 이내)
 - 우회상장, 재상장 및 합병상장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(제35조, 제40조, 제75조)
 - 의무보유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에게도 의무보유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화
- 의무보유 대상자 확대 및 기타 의무보유 근거 명확화 등
 - 책임경영 제고를 위해 의무보유 대상자인 신규상장기업의 임원(현행은 이사, 감사 및 상법상 집행임원으로 한정)에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를 추가(제27조)
 - 우회상장, 재상장 및 합병상장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(제35조, 제40조, 제75조)

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- 의무보유 기간 중 의무보유 대상인 주식등의 권리행사로 취득하는 주식도 의무보유 대상임을 명확화(제27조, 제124조 등)
 - 전환사채가 의무보유 대상인 경우 전환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주식 등
 - 부동산투자회사(리츠)의 신규상장시 의무보유 대상에 전환사채 등도 포함됨을 명시
-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법인의 주주등에 대해서도 의무보유를 부과(3년 이내)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(제49조)

나.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(2022/3/31 개정 · 2022/4/11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채권상장법인에 영업의 정지등이 발생하는 경우 상장폐지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여, 채권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주된 영업정지 등 발생 시 채권 상장폐지 기준 명확화(제78조)
 - 영업정지등으로 인한 잔여 사업부문의 매출액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상장폐지
 - 영업정지는 조업의 전부 중단, 면허 취소 등 사실상 주된 영업활동 정지에 준하는 경우 포함(규정 제92조 제1항 제1호 사목)
 - 잔여 사업부문의 매출액 기준은 거래소가 정하는 최소규모 미달 여부로 판단
 - 다만, 해당 법인에 자본잠식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 예외로 처리할 수 있는 장치 마련

다.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(2022/3/16 개정 · 2022/3/18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신규상장기업 등의 상장 후 책임경영 및 공정한 주가의 조기형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하는 주식을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주식매수선택권(스톡옵션)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의무보유(제26조, 제36조, 제61조, 제77조)
 - 신규상장 시 책임경영 및 공정한 주가의 조기형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대주주등이 의무보유 기간 중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도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
 - 우회상장 및 합병상장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

□ 기타 의무보유 근거 명확화(제2조)

- 주식등의 권리행사 또는 주식배당으로 취득하는 주식도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됨을 명시

라.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(2022/3/17 개정 · 2022/3/18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「코스닥시장 상장규정」 개정(2022.3.16)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하는 주식이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의무보유를 위한 의무보유확약서 서식 정비(별지 제14호 서식)
 -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하는 주식의 수량과 의무보유 기간을 의무보유 내역에 기재하도록 의무보유 확약서 서식 정비

마.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2022/3/24 개정 · 2022/3/28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CCP의 신용위험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관투자자 시장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 결제회원이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용위험한도 초과포지션 해소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신용위험한도 초과포지션 해소의무 이행 간주 요건 신설(제94조의2)
 - 결제회원이 적립(예탁)하여야 할 기본공동기금과 파생상품계좌별 순위험증거금액 합산액을 초과하여 결제회원의 재산으로 적립(예탁)한 규모가 신용위험거래증거금액보다 큰 경우 신용위험한도를 초과한 포지션을 해소한 것으로 간주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

3. 금융투자협회 규정

가.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(투자일임회사 등의 수요예측 참여요건 강화)

나. 연금저축계좌설정상약관 (퇴직연금계좌의 범위 확대 등)

3. 금융투자협회 규정*

가.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(2022/3/10 개정 · 2022/5/1 시행)

1) 개정 이유

□ IPO 시장 과열에 따른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 및 편법적 행위 등을 방지하고, 수요예측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□ 투자일임회사 등의 수요예측 참여요건 강화(제5조의2)

— (기존) 인수업무규정 개정(2015.6)으로 투자일임회사의 수요예측 참여를 허용

-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시 투자일임계약 관련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, 투자일임회사의 고유 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이 없음

〈투자일임재산을 통한 수요예측 참여 요건〉

- ① 투자일임 투자자가 기관투자자일 것
- ② 투자일임 투자자가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의 계열회사 등 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닐 것
- ③ 투자일임 투자자가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가 아닐 것
-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, 투자일임재산이 5억원(수요예측일 전 3개월 평잔) 이상일 것

* 하이일드펀드인 경우 ①, ④ 요건 미적용

- 투자일임회사의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, 최근 고유재산의 IPO 수요예측 참여가 주된 목적으로 판단되는 투자일임업 등록신청 급증

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- (개정) 투자일임회사의 수요예측 참여 요건 강화 등을 통해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 증식 수단으로 악용을 방지하고, 수요예측 시장 질서 유지
- ① 투자일임업 등록 후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재산 규모가 50억원 이상이거나 등록 후 2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투자일임재산 규모가 300억원 이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회사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 참여 허용
 - 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, 투자일임재산에 대해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투자일임계약 관련 요건을 갖춘 경우 수요예측 참여가 가능하여 투자일임업의 업무 영위에는 영향이 없음
-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
 - 일임업자 고유재산의 수요예측 참여 제한 시 사모운용사로 우회 등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
- ②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으로 다른 투자일임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맺은 후, 다른 투자일임회사의 투자일임재산으로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행위를 금지
 -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 참여요건과 관련하여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(기관투자자)에서 투자일임회사를 제외
- ③ 투자일임회사 등의 수요예측 참여시 참여요건에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증빙서류 제출의무 부과
 - 예시) 투자일임업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, 투자일임재산 증빙서류(증권사 계좌 사본 및 입금증 사본) 등

나.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(2022/3/14 개정 · 시행)

1) 개정 이유

□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(2022.2.15)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

- 소득세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
 -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를 퇴직연금계좌에 추가(제40조의2 제1항)
 - 연금계좌 내 과세제외금액을 인출할 경우 개인자산종합계좌 만기시 연금계좌로 전환한 금액에 대한 인출순서를 정함(제40조의3 제2항)
 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를 부득이한 인출사유로 추가(제20조의2 제1항)

2) 주요 내용

□ 퇴직연금계좌의 범위 확대(제2조 제5호)

-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를 퇴직연금계좌의 범위에 추가

□ 과세제외금액의 인출순서 명확화(제12조 제4항)

- 연금계좌에서 과세제외금액을 인출할 경우 개인자산종합계좌 전환금액의 인출순서를 명확히 정함

□ 연금소득의 부득이한 인출 사유 추가(제17조 제1항)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 제1항 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를 부득이한 인출사유로 추가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